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제안)이유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분야별·기능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의 법으로 분법되고 그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로 공포되면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도 새로운 지방세 법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로 함

나. 제1장 총칙

-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2)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제2장 등록면허세

- 1) 제1절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2) 제2절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기,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라. 제3장 재산세

- 1) 세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2) 중과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4조)
- 4)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5)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6)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7) 납세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이 3개 법으로 분법(2010.3.31 공포, 2011.1.1 시행)되면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
-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의 제1장 총칙부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로 분리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개정하여,
 -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로 하고,

- 지방세법 관련법규 인용조문을 정비
- 기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시세 전환으로 관련규정 삭제 및 신설되는 등록면허세의 구세전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개정내용 대비표

개 정 전(현행 구세조례)	개 정 후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과세의 근거, 정의 (§1~§2)	제1장 총칙 ○목적 (§1) ○정의 및 사무위임 (§2~§3)	존치(개정)
○구세의 세목 등 (§3~§5) 제2절 부과 징수 ○기한연장, 징수유예, 서류송달방법 등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일반사항 (§6~§13조의2) ○ 지방세 관련 위원회 (§14~ §14 조의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기본조례」로 이관, 신규제정	삭제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 (§15~§16) 제2절 재산세 (§17~§27) 제3절 주민세 재산분 (§28~§30)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31~ §33)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4~§6)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7~§9) 제3장 재산세 (§10~§18)	존치(개정)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등록과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의무 등을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